

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38호서식] <신설 2020. 3. 13.>
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

[illegible]

비고: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별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